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·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5월 2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5월 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ㅇ제10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(2003년5월14일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청소사업소장 박한권)

□ 제안이유

○ 폐기물관리법 개병('99. 2. 8)에 따라 상위법관 불부합되는 인용조문을 조정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○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불부합되는 인용조문을 조정함(안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)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　　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　음
나. 반대토론 : 없　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　　음

7. 기타필요한 사항

○ 없　　음

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·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129호
의결연월일	2003.5.15 (제104회)

제출년월일 : 2003. 5. 2.

제 출 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○ 폐기물관리법 개정('99. 2. 8)에 따라 상위법과 불부합되는 인용조문을 조정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○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불부합되는 인용조문을 조정함(안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)

부천시조례 제　　호

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·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·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중 "법 제30조제5항"을 "법 제30조의3제1항"으로 하고 제7조제1항중 "법 제26조제2항제1호"를 "법 제26조제3항"으로 한다.

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소각시설 운영등) ① (생 략) ②시장은 법 제30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"별표8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 ③ 및 ④ (생 략)	제6조(소각시설 운영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 법 제30조의3제1항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③ 및 ④ (현행과 같음)
제7조(반입허가 및 손실보상) ① 구청장 및 법 제2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(수집·운반업) 허가를 받은 자 중 소각시설을 사용하고자 폐기물 반입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는 한 반입을 허가하여야 한다. 다만,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운반차량 대수를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. ② (생략)	제7조(반입허가 및 손실보상) ① ----------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② (현행과 같음)